

# 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
( 송행숙 의원 발의 )

「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16일

고흥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
2. 제정이유
  -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 추진과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
  -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범위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활력화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.
3. 주요 내용
  - 목적 :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(안 제1조)
  - 정의 :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규정(안 제2조)

- 군수의 책무 :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시책 수립·시행 의무 규정 (안 제3조)
-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: 연간 시행계획 수립·시행 및 관련 기관·법인 단체에 협조 요청 등 규정 (안 제4조)
- 실태조사 :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근거 규정 (안 제5조)
- 경제활동 촉진사업 :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의 범위 규정 (안 제6조)
- 사무의 위탁 :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 (안 제7조)

#### 4. 예고기간

- 2020. 6. 16. ~ 2020. 7. 5. (20일간)

#### 5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. 7. 6.(월)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(의회사무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내용 :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

- 개 인 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- 기관·단체 :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- 제출처 :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주 소 :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(59542)
- 전 화 : 061-830-6066 (FAX 061-830-5595)

- 제출방법 : 우편, FAX, 직접방문

- 붙임 1. 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.  
 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## 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에 따라 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경력단절여성등”이란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고흥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
2. “경제활동 촉진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.

**제3조(군수의 책무)** ① 고흥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및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** ① 군수는 법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·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·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)**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

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·교육훈련·취업 실태와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.

**제6조(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)**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지원 사업
2. 경력단절여성등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
3. 경력단절여성등 인턴취업 지원 사업
4.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
5.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,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·운영
6.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7조(사무의 위탁)**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(홍보)**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·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계 법 령

## [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]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경력단절여성등“이란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.
2. “경제활동 촉진“이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교육기관·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.

**제3조(국가 등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,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)**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“이라 한다)을 세워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
2.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
3.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 례 명 : 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 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